

물품보관약관

본 약관은 S.F. Express (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물품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주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고객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라 함은 회사의 물품보관 시설에 일정기간 동안 물품을 맡기는 것을 말하며, ‘고객’이라 함은 물품보관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기본원칙)

- ① 본 약관은 물품보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회사와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고 보관료를 선납하는 경우 적용된다.
- ② 물품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이용안내)

- ① 영업시간 ([월-금, 09:00 – 18:00]) 내에만 보관 및 찾기가 가능하다.
- ② 보관료는 별도로 제시된 요금표에 의하고 선불결제 해야 한다.
- ③ 보관 만료일이 경과한 후 24시간 내에 고객이 전화 또는 서면으로 보관 연장을 따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최소 15일) 보관으로 자동 연장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어떠한 통보 없이 보관 만료일 지난 이틀 후 물품을 찾는 경우에는 선납한 보관료 외에 장기(15일) 보관료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4조 (보관 제한 물품)

다음 각호의 물품은 보관이 불가능하다. 또한, 고객이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래 물품에 대한 보관을 위탁한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아래 물품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는다.

- ① 화약류, 총포 도검류와 인화물질 및 위험한 물품 등의 경우
- ② 법으로 보관 유통이 금지된 물품 또는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 ③ 현금 및 유가증권 등 현금화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 ④ 보석, 골동품 등의 고가물품 등인 경우
- ⑤ 살아있는 동물, 동물 사체 등인 경우
- ⑥ 변질 및 물성이 변할 수 있는 물품 등인 경우
- ⑦ 보관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⑧ 기타 위 각 호에서 예시된 물품에 준하여 객관적으로 회사가 서비스하기 부적절한 물품

제5조 (보관 시 유의사항)

- ① 의류는 반드시 완전건조 후 보관 요청해야 한다.
- ② 깨지기 쉬운 물품 등은 에어캡 등으로 포장하고 보관 요청하여야 하며, 포장이 되지 않은 물품의 훼손 및 파손 등에 대해 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고객이 택배사(배송대행사)를 통해 물품을 보내는 경우, 사전 협의에 의해 보관료가 선납 되어야 한다. 보관료를 선납하는 경우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물품이 도착하는 날부터 계약일(물품보관)이 시작된다.
- ④ 보관 만료일이 30일 이상 경과된 경우 ‘회사’는 보관물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6조 (보관물품 검사)

회사는 보관물품이 위 제 4조에 위반한다는 의심이 있을 때,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보관물품 내용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 검사 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제7조 (부적합한 보관물품의 조치)

- ① 제6조에 따른 보관물품 검사 결과 보관물품의 변질, 훼손으로 확대손해가 예상되거나 위험물로서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것으로 판명 나는 경우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그 외의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 ③ 고객은 제1항, 2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전항 통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관물건의 폐기 및 그 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사의 면책사항)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 물품과 관련하여 고객 본인 또는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아래 사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 ② 고가의 물품을 보관하여 발생하는 손해 (50만원 이상)
- ③ 위탁 전 물품의 특이 사항을 회사에 사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④ 보관 물건의 특성상 하자·습기·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 등으로 인한 손해
- ⑤ 고객이 제3조, 제4조, 제5조 또는 제7조의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⑥ 택배사(배송대행사)를 통해 물품을 보내는 경우에는 보관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그 외 파손 및 변질 등은 택배사에 문의 해야 한다.
- ⑦ 제 3자가 고객이 최초 물품을 맡긴 정보(이름 연락처 보관증)를 제시하고 물품을 찾아가는 경우

제9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명백히 회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 ① 고객이 이용 조건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구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 ② 보관화물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객이 검사를 거절할 경우
- ③ 보관물품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 받고도 불이행 할 때

제11조 (관할법원)

회사와 고객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2 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

보관물품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고객이 보관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회사에게 통지 하지 않으면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